

2014년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자유응모과제 시행계획 공고

「2014년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자유응모과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공고 개요

- 공고규모 : '14년 정부출연금 86억원 이내, 3개 연구개발사업
 - 연구과제별 연간 정부출연금 3억 이내, 연구기간 3년 이내 지원
(단위 : 백만원 이내)

대상 사업	'14년 정부출연금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3,100
첨단생산기술개발	1,300
수출전략기술개발사업	4,200
합 계	8,600

* 예산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공고기간 : '14. 4. 30.(수) ~ 5. 30.(금), 31일간
- 접수기간 : '14. 5. 16.(금) ~ 5. 30.(금) 18:00 까지

2

신청 자격 및 제한

□ 연구기관 신청자격

- 국·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 연구소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물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연구책임자는 소속기관에 정규로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단, 주관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상근으로 재직 중인 자*로 함
- * 상근 및 정규로 재직 중인 자 : 관련법령에 따라 소속기관에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공무원·교원)연금 등을 납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거나 기관 또는 법인의 장 또는 대표이사인 자를 말함

□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 연구책임자(주관·협동·세부)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 단, 예외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제2항 참조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할 수 없음

3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 농림수산물 R&D 통합정보서비스(FRIS, <http://www.fris.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우편, 인편접수 불가)
- 신청절차 : FRIS 접속 → 로그인 → 농식품부사업 참여하기 클릭 → 과제 접수 → 신청내용 입력 → 신청서류 업로드 → 접수완료 → 접수증 수령
- ※ 신청마감일 18시까지 신청내용 입력(중간저장 가능), 제출서류 등록 및 접수를 완료하여야 함

□ 제출서류

○ (필수) 공통 제출서류

- ①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개발과제 신청 공문
- ② 연구개발계획서 표지
- ③ 연구개발계획서
- ④ 익명화 연구개발계획서
- ⑤ 신규과제 주관연구기관 확인서(붙임 포함)
- ⑥ 유사·중복성 검토의견서

○ 해당 시 제출서류

- ⑦ (주관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 기업체 주관연구기관 사전조사표 확인서(붙임 포함)
- ⑧ (주관연구기관이 국공립 연구기관인 경우) 국공립 연구기관 승인서
- ⑨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신청할 경우) 보안등급제안서

※ 공통 제출서류 ①, ②, ⑤, ⑥번 및 해당 시 제출서류 ⑦, ⑧, ⑨번은 주관연구기관장의 직인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서명을 날인하여야 함

※ 필수·해당 시 제출서류의 누락, 직인·서명의 누락, 제출서류 허위 기재 등의 경우에는 사전검토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주의하여야 함

□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선택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4에 따라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분류

○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준수

구분	기업부담금	현금부담금
대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기업부담금의 15% 이상
중견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기업부담금의 13% 이상
중소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기업부담금의 10%이상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중소기업 규모)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기업부담금의 10%이상
참여기업이 2개이고 각각 중소기업, 중견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기업부담금의 13% 이상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중견기업의 비율이 2/3이상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기업부담금의 13% 이상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중소기업의 비율이 2/3이상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기업부담금의 10%이상

* 이외의 경우는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 2. 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참고

○ 연구장비 및 시설 도입기준 준수

- 연구장비 및 시설을 구입·구축하고자 하는 과제는 「국가연구 시설장비관리 표준지침」에 따라 협약체결 이전에 농림수산물 기술기획평가원의 연구장비 및 시설 도입에 대한 심의*를 받게 됨

* 상세한 심의기준 및 심의항목 등은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 표준지침」 참조

4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6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제2절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선정
- 선정절차



※ 평가절차별 세부사항은 「2014년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자유응모 과제 시행계획 공고 신청요강」 참조

- 예산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선정 시 우대사항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 1에 의한 가·감점 기준 적용

5

문의처 및 기타

- 관련규정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등
-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자격유무, 신청서류 구비여부,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여부 등의 검토결과가 부적정하거나 신청한 연구개발 계획서의 내용이 공고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허위로 기재한 경우는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 ([http:// www.ipet.re.kr/](http://www.ipet.re.kr/)) 「2014년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자유응모과제 시행계획 공고 신청요강」 참조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공고관련 일반문의 : 사업총괄실(031-420-6752, 6753)
 - 과제 및 연구관련 문의 : 사업관리실(031-420-6765, 6768, 6769)
 - 접수시스템 관련문의 : 정보분석실(031-420-6737, 6739, 6796)

<붙임 1> 제출서류 서식

- ①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개발과제 신청 공문
- ② 연구개발계획서 표지
- ③ 연구개발계획서
- ④ 익명화 연구개발계획서
- ⑤ 신규과제 주관연구기관 확인서(붙임 포함)
- ⑥ 유사·중복성 검토의견서
- ⑦ (주관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 기업체 주관연구기관 사전조사표 확인서(붙임 포함)
- ⑧ (주관연구기관이 국공립 연구기관인 경우) 국공립 연구기관 승인서
- ⑨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신청할 경우) 보안등급제안서

※ 본 공고문의 제출서류 서식 활용을 위한 HWP파일은 농림수산 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FRIS, <http://www.fris.go.kr>) 홈페이지의 'R&D공고'란의 동일 공고문에 첨부된 공고문 파일 이용 요망

<연구개발과제 요약서>

과제명			
연구책임자	(성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소속기관명)	(E-mail)	(전화번호)
	(지역)	(세부전공)	(학위)

○ 연구개발 목표

○ 연구내용

○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상품화 및 사업화 방법 등 포함)

색인어 (5개 내외)	한글	
	영문	

1. 연구개발의 필요성

* 수행하려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의 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국내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및 주요내용

*

나. 과제별(세부·협동)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다. 연차별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구분	연도	연구개발의 목표	연구개발의 내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 연차별 1 페이지 작성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 해당 연구개발결과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이용될 수 있는 기준 또는 주안점을 가시적이고 정량적으로 기술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 * 추진전략·방법: 기술정보수집, 전문가확보, 다른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술
- * 추진체계: 국내·외 수준과 우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연구개발 최종목표의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하려는 내용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5.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추진계획(국제공동연구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함)

- * 추진배경, 성공가능성,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용 및 향후 추진일정 등 기술

6.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 * 활용방안: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기업화, 추가연구, 기술이전 등을 서술
- * 기대성과: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기술적 측면과 경제·산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간단명료하게 기술

7. 연구개발결과의 성과 및 활용목표

(단위 : 건수)

성과목표	지식재산권		논문		학술 발표	기술 거래	교육 지도	사업 화	기술 인증	인력 양성	정책 활용	홍보 전시	기 타
	출원	등록	SCI	비 SCI									
최종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소 계													
종료 1차년도													
종료 2차년도													
종료 3차년도													
종료 4차년도													
종료 5차년도													
소 계													
합 계													

* 단계별 연구성과 목표는 향후 중간/최종/추적평가 등의 정량적 평가지표로 활용됨

** 연구성과는 연구개발계획에 맞춰 도출하고 예시와 같이 작성

성과지표명	세부항목	성과지표명	세부항목
지식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규격 품종, 프로그램	기술인증	기술·제품 인증 등
논문/학술발표	국내외 논문(SCI, 비SCI) 국내외 학술발표	인력양성	연구인력 활용/양성
기술거래	기술이전, 기술료	정책활용	정책건의, 정책반영 등
교육지도	교육지도(현장컨설팅)	홍보/전시	신문, 방송, 저널, 전시회 등
사업화	제품화, 고용창출, 매출발생 등	기타	국제화협력, 타 연구개발 활용 등

8. 주관연구책임자 주요 연구실적

연구 제목	연구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 권호 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비 지급기관	비고

* 주관연구책임자 특허, 실용화 실적 : 특허, 실용화 실적을 10개 이내로 서술

9. 주관연구책임자 특허, 실용화 실적 등(10개 이내)

--

10. 연구책임자(세부, 협동)의 경우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함)

과제구분	과제명	지원기관	연구비(원) (과제신청자 연구비)	연구기간 (부터~까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참여율
제1세부 (주관)						
제2세부						
제1협동						
제2협동						

*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외에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그 현황을 기록

11. 연구성과의 등록·기탁 의향

(예시)연구개발비 지원기관에서 본 과제 수행을 통해 창출한 논문, 특허, 보고서원문, 연구기자재,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화합물, 소프트웨어 등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의 제13항에 따른 연구성과 분야별 관리·유통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할 것을 요청받을 경우, 주관연구책임자는 이에 동의하여 모든 결과를 기탁하겠습니다.

12. 세부·협동·위탁책임자 및 연구원 편성표

과제구분	성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소속기관명	직급	전공 및 학위			
					학위	연도	전공	학교
제1세부 (주관)								
제1협동								

13.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가. 연도별 연구개발비 소요내역

(단위 : 천원)

비목	연도 세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		합계		비고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직 접 비	인건비	미지급용											
		지급용											
		현물											
	학생인건비												
	연구 장비· 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과제추진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 접 비	간접비												
연구개발비 총액													

나. 당해연차 과제별 연구개발비 총괄

(단위 : 천원)

비목	연도 세목		제1세부(주관)		제2세부		제1협동		...		합계		비고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직접비	인건비	미지급용											
		지급용											
		현물											
	학생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과제추진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연구개발비 총액													

다. 세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 * 연구기간 중 해당연차(예 : 1차년도)에 해당되는 연구개발비 소요명세를 구체적으로 작성
- ** 과제별로 구분이 되도록 작성 : (1)-(가)의 아래에 [제1세부] 또는 [제1협동] 등으로 구분

(1) 인건비

(단위 : 천원)

과제구분	성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부서명 (직급)	월 급여	참여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	총액	타연구사업 참여현황		비고
					참여종료일				사업명	참여율 (%)	
					. .						
					. .						
					. .						
					. .						
합 계					. .						

- * 과제구분은 제1세부, 제1협동 등으로 표시
- ** 직급은 책임급, 선임급, 연구원급, 기타급으로 표기
- *** 내부인건비가 당해연구과제에서 지급되지 아니하는 연구원도 관련 경비의 산출근거로서 작성 및 비고란에 '지급용' 또는 '미지급용'으로 표기
- **** 참여율은 정부출연(연), 특정연 등의 경우 기관운영출연금,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책연구사업 및 기술개발용역사업의 총 참여율을 기재함

(2) 학생인건비

(단위 : 천원)

과 정	월 급여	man-month 총량	총 급여	비 고
박사후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총 액				

(3) 연구장비·재료비

[제1세부]

① 연구기자재비

구분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원)	비 고
구입							
임차							
합 계							

* 참여기업이 현물로 부담하는 경우 비고란에 '현물'로 표기, 합계란에도 ()로 별도 기재

** 비고란에는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시설비

· 설치비

시설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원)	비 고
합 계						

* 참여기업이 현물로 부담하는 경우 비고란에 '현물'로 표기, 합계란에도 ()로 별도 기재

· 운영비(00원/개소 × 00월 × 00개소) : 원

③ 시약 및 재료비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원)	비 고
:						
합 계						

* 참여기업이 현물로 부담하는 경우 비고란에 '현물'로 표기, 합계란에도 ()로 별도 기재

④ 전산처리비

○ 전산처리비	○○○원/건 × ○○건 =	원
---------	----------------	---

⑤ 시험분석료

○ 시험분석료	○○○원/건 × ○○건 =	원
---------	----------------	---

⑥ 시작품 제작비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원)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	내부제작/외주가 공여부기재
합 계							

* 참여기업이 현물로 부담하는 경우 비고란에 ‘현물’로 표기, 합계란에도 ()로 별도 기재

(4) 연구과제추진비

[제1세부]

① 국내 출장여비

○ 국내여비(○박 ○일)	원
---------------	---

- * 참여직급별료(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타급) 구분하여 작성하되, 여비단가는 각 기관별 여비단가 적용하고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 **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아니됨

② 사무용품비,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 사무용품비	원
○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원

*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함

③ 회의비

○ 회의비	원
-------	---

* 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함

④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 식대	원
------	---

(5) 연구활동비

[제1세부]

① 국외 출장여비

○ 국외여비(○박 ○일)		원
여비 합계		원

- * 참여직급별료(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타급) 구분하여 작성하되, 여비단가는 각 기관별 여비단가 적용하고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 **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아니됨

② 수용비 및 수수료

○ 인쇄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원
○ 공공요금		원
○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기타		원
수용비 및 수수료 합계		원

③ 전문가 활용비 등

○ 전문가 활용비		원		
○ 국내외 교육 훈련비		원		
○ 도서 등 문헌구입비		원		
○ 회의장 사용료		원		
○ 세미나 개최비		원		
○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		
○ 원고료		원		
○ 통역료		원		
○ 속기료		원		
○ 기술도입비				
기술도입명	도입국	금액 (단위: 원)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	비고
합계				
전문가 활용비 등 합계				원

- * 비고란에는 기술도입의 형태(예: know - how 등)를 기재

④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시험·분석·검사	원
○ 임상시험	원
○ 기술정보수집	원
○ 특허정보조사	원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합 계	원

⑤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 과제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 과제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원
----------------------	---

(6) 연구수당

[제1세부]

○ 연구수당 ○○○○원(인건비) × ○○% =	원
--------------------------------	---

(7) 위탁연구개발비(위탁연구계획 및 비목별 연구비 소요명세 별첨)

[제1세부]

과제명(기관명)	금액
	원

(8) 간접비

[제1세부]

○ 간접비 ○○○○원(인건비+직접비) × ○○% =	원
- 인력지원비 ○○○○원(인건비+직접비) × ○○% =	
- 연구지원비 ○○○○원(인건비+직접비) × ○○% =	
- 성과활용지원비 ○○○○원(인건비+직접비) × ○○% =	

* 단, 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사업단운영비,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성과활용지원비만 계상하되 구체적으로 명기

14. 연구책임자계정 학생인건비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연구개발사업 공고 일 현재 잔액(A)*	현재 수행중인 과제 의 학생인건비 집행 예정액(B)	금회 계상 학생인건비(C)	계 (D=A-B+C)
금액				

* 기관별로 통합 관리하는 학생인건비 중 연구책임자 계좌의 잔액 및 제안과제에 계상된 학생인건비를 기재

※ 현재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B 관련)

과 제 명	지원기관	협약기간	공고일 이후 학생인건비 지급예정액

15.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보안등급분류	
결정사유	

* 별첨 3의 보안등급 제안서 작성 내용 중 주요 내용만을 명시하며, 일반과제일 경우 “일반과제”로만 표시하고 결정사유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4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작성

16.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해당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 참여연구원의 교육훈련 및 건강검진실시, 보험가입 등) 및 기타 당해 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필요한 연구실안전 확보 계획 등을 서술

17. 참여기업 현황

기업체명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 연월일		주된 업종		
기업 유형		상시종업원수		
재무	총 자산	백만원	주요 생산 제품	
	자기 자본	백만원		
	매출액	년도		○
		백만원		○
당기순이익	백만원	○		
주소	본사	전화번호	00)000-0000	
	공장	전화번호	00)000-0000	
실무 연락 책임자	소속	성명		
	직위	전화번호	00)000-0000	
	E-Mail	FAX	00)000-0000	

<별첨>

1) 연구과제의 3P분석(특허, 논문, 제품시장) : “별첨 1” 양식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 : “별첨 2” 양식

*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을 기재한 자는 빠짐없이 각자 제출하여야 함

[별첨 1]

특허, 논문, 제품(시장) 분석보고서

신청과제명			
주관연구책임자		주관기관	

1. 본 연구관련 국내외 기술수준 비교

개발기술명	관련기술 최고보유국	현재 기술수준		기술개발 목표수준	비고
		우리나라	연구신청팀		
(기술 1)					
(기술 2)					

- 1) 개발기술명은 본 연구과제 최종 연구개발 목표기술을 의미
- 2) 현재 기술수준은 선진국 100% 대비 우리나라 및 신청한 연구팀의 기술수준 표시
- 3) 기술개발 목표수준은 당해과제 완료 후 선진국 100% 대비 목표수준 제시
- 4) 부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비교란에 작성

2. 특허분석

가. 특허분석 범위

(예시)

대상국가	국내, 국외(미국, 일본, 유럽)
특허 DB	특허정보원 DB(www.kipris.or.kr), Aureka DB
검색기간	최근 5년간
검색범위	제목 및 초록

나. 특허분석에 따른 본 연구과제와의 관련성

개발기술명	(기술 1)	(기술 2)
Keyword		
검색건수		
유효특허건수		
핵심특허 및 관련성	특허명	
	보유국	
	등록년도	
	관련성(%)	
	유사점	
	차이점	

- 1) 개발기술명은 본 연구과제 최종 연구개발 목표기술을 의미
- 2) keyword는 검색어를 의미하며, 검색건수는 keyword에 의한 총 검색건수를, 유효특허건수는 검색한 특허 중 핵심(세부)개발기술과 관련성이 있는 특허를 의미

3) 핵심특허는 개발기술과의 관련성이 높고 인용도가 높은 특허를 기준으로 분석

3. 논문분석

가. 논문분석 범위

(예시)

대상국가	미국, 일본, 유럽
논문 DB	Aureka DB, pubmed DB(www.ncbi.nlm.nih.gov), 국회도서관(www.nanet.go.kr)
검색기간	최근 5년간
검색범위	제목, 초록 및 키워드

나. 논문분석에 따른 본 연구과제와의 관련성

개발기술명	(기술 1)	(기술 2)
Keyword		
검색건수		
유효논문건수		
핵심논문 및 관련성	논문명	
	학술지명	
	저 자	
	게재년도	
	관련성(%)	
	유사점	
	차이점	

- 1) 개발기술명은 본 연구과제 최종 연구개발 목표기술을 의미
- 2) keyword는 검색어를 의미하며, 검색건수는 keyword에 의한 총검색건수를, 유효논문건수는 검색한 논문 중 핵심(세부)개발기술과 관련성이 있는 논문을 의미
- 3) 핵심논문은 개발기술과의 관련성이 높고 인용도가 높은 논문을 기준으로 분석

4. 제품 및 시장 분석(최신의 자료로 작성하되, 반드시 출처 명시)

가. 생산 및 시장현황

- 1) 국내 제품생산 및 시장 현황
- 2) 국외 제품생산 및 시장 현황

나. 개발기술의 산업화 방향 및 기대효과

- 1) 산업화 방향(제품의 특징, 대상 등)

○

2) 산업화를 통한 기대효과

(단위 : 백만원)

산업화 기준 항 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직접 경제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부가가치 창출액						
합 계						

- 1) 직접 경제효과 : 본 연구과제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통해 기대되는 제품의 매출액 추정치
- 2) 경제적 파급효과 : 본 연구과제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통한 농가소득효과, 비용절감효과 등 추정치
- 3) 부가가치 창출액 : 본 연구과제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통해 기대되는 수출효과, 브랜드가치 등 추정치

5. 3P(특허,논문,제품)분석을 통한 연구추진계획

가. 분석결과 향후 연구계획(특허, 논문, 제품 측면에서 연구방향 제시)

1) 특허분석 측면

- 기존 특허는분야에 치중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과제에서는 ...방향으로 연구를 추진하여 ...특허 등을 국내 및 국외에 출원할 계획임
-

2) 논문분석 측면

- 기존 논문은분야에 치중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과제에서는 ...방향으로 연구를 추진하여 ...논문 등을학술지 등에 게재할 계획임
-

3) 제품 및 시장분석 측면

- 국내 및 국외시장 분석결과 ...제품 등의 생산 및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 쇠퇴기에 접어들었으므로, 본 연구과제에서는 ...방향으로 연구를 추진하여 ...제품 등을 생산하여 국내 및 국외에 판매할 계획임
-

<붙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현황

○ 세부과제별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현황(접수마감일 현재)

과제 구성			수행과제 목록							비고	
구분	성명	순번*	지원기관	과제명	연구기간	참여형태	참여율	3책5공	참여제한여부		
주관	연구 책임자	1	농진청	벼 품종 개발....	2000.8.~2013.8	세부책임자	20%	책	○		
		2	지경부	콩 품종 개발....	2000.8.~2013.8	협동책임자	30%	책	X		
		3					세부연구원		공		
		4					협동연구원		해당없음		
		5					위탁연구원		해당없음		
	참여 연구원										
세부2											
협동1											

* 참여형태 : 세부·협동·위탁 / 책임자·연구원 중 해당사항 기재

* 3책 5공 : “책”, “공”, “해당없음” 중 선택하여 기재

* 참여제한 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참여제한)중인지 여부를 확인. 참여제한자는 “O”, 참여제한자가 아닌 경우 ”X“ 표기

* 비고 : 3책5공에 해당되지 않는 과제의 경우 참고의 <3책5공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1~8번에 따라 사유를 기재

* 접수마감일 현재 참여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없는 연구과제의 경우 과제명에 ‘해당없음’을 기재하여 제출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현황 작성방법

< 3책 5공 적용기준 >

1.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임
2. 연구과제수는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연구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지는 경우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에 해당함
 - * 주관연구책임자뿐 아니라 세부·협동연구책임자도 '책'으로 산정
 - *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과제는 '공'으로 산정

1. NTIS(www.ntis.go.kr)에서 각 연구자의 과제 참여 정보를 조회한 후 작성

- * 범부처 정보공유 → R&D과제 참여정보 → 해당 연구원 조회
- * 각 세부·협동연구기관별로 작성하되 각 연구기관별로 책임자와 연구원을 취합하여 작성(주관연구기관장 날인 필수)

2. NTIS에서 조회된 내용 중 수행중인 과제는 순번대로 모두 작성

- * 중복된 과제는 비고란에 "3번 과제의 하위과제임" 등의 방법으로 표기

3. NTIS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수행중인 과제는 최하위 순번에 작성

4. 3책5공에 해당되는 과제는 "책", "공"으로 표기

5. "3책5공 적용에서 제외되는 과제"는 그 해당 사유를 비고에 작성하고 증빙서류 첨부(해당 사유가 표기되어 있는 연구개발계획서 표지 또는 요약서)

<3책5공에 적용되지 않는 과제>

1. 신청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정부출연금 1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
5. 소규모 연구개발과제(세부과제로 나누어지지 않은 정부출연금 5천만원 이하 과제)
6. 경상연구과제(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이 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
 - * 정부출연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 특정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7.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사업
8. 위탁연구과제

⑥ 유사·중복성 검토의견서

유사·중복성 검토의견서

□ 과제명 :

○ 책임자급(주관·세부·협동) 기존 수행과제 유사·중복성 검토의견(2010년~현재)

구분	성명	년도	과제명	중복	유사	해당 없음	검토의견(중복성 등)
주관	홍길동	2011	버 품종 개발....				
		2012	콩 품종 개발....				
2세부	김영희	2012	옥수수 품종 개발....				
		2013	마 품종 개발....				
1협동	김철수						

○ 기존 국가연구개발과제와 유사·중복성 검토의견

지원 년도	부처명	사업명	과제명	중복	유사	해당 없음	검토의견(중복성 등)

* NTIS(www.ntis.go.kr)의 '유사과제 검색'기능과 FRIS(www.fris.go.kr)의 '유사·중복성 과제검색'기능을 이용하여 조회·작성

* 해당없을 경우 '해당없음'란에 체크하여 제출

상기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당내용의 공개를 동의하오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조치도 수용하고 이의제기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4. . .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장 : (인)

[별첨 1]

기업체 주관연구기관 사전조사표

20

1. 신청 과제개요

신청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2. 기업 일반현황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설립년도			
주요생산품			
연락처	TEL. FAX.	담당자	
주소			
홈페이지			

3. 재무현황

자본금	_____ 천만원		
연간 매출액	_____ 천만원(20__년)	수출액	_____ 천만원(20__년)
연구개발투자비용	_____ 천만원(20__년)	매출액대비 비율	_____ %
총종업원수	_____ 명	연구가용인력	_____ 명
재무상황	부채비율 : _____ %(20__년 기준)		

4. 주요 연혁

○	
○	
○	
○	

5. 주요 기술개발성과 활용(최근 3년간)

과제(기술)명	지원기관	개발기간	주요성과	기술실시 (계약)건수	매출규모 (백만원/년)

6. 연구개발 기반

연구인력 수	명	종업원 수	명
주요 시설 및 설비	○ ○ ○ ○		
주요 기자재	○ ○ ○ ○		

- 붙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 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사본)
 2. 최근 2개년도 기업 회계자료(재무제표) 사본 1부
 3. 신청과제 참여자 재직현황(재직증명서 또는 급여입금확인서류 등)

조사자 소속	직 급	성 명	서 명

[별첨 2]

0 0 기업 재무현황

년 월 현재

안정성 지표

구 분		당기		전기	
		산식	비율	산식	비율
유동비율	$(\text{유동자산}/\text{유동부채}) \times 100$				
부채비율	$(\text{부채총계}/\text{자기자본}) \times 100$				
차입금의존도	$(\text{차입금}/\text{총자산}) \times 100$				

요약 대차대조표

수익성지표/성장성 지표

구 분		당기		전기	
		산식	비율	산식	비율
매출액영업이익률	$(\text{영업이익}/\text{매출액}) \times 100$				
총자산순이익률	$(\text{순이익}/\text{총자산}) \times 100$				

요약 손익계산서

⑨ **보안등급제안서**(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신청할 경우)

보안등급 제안서

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총 연구개발비	천원(정부출연 연구개발비 천원, 기업부담금 천원)
연구기간	20 . . . ~ . (년)
보안등급 해당항목	<input type="checkbox"/> 1)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input type="checkbox"/> 2)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input type="checkbox"/>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input type="checkbox"/> 4) 「대외무역법」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input type="checkbox"/> 5) 그 밖에 장관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
보안등급 제안사유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7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해당 규정에 따라 보안과제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의 장 :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 보안과제로 신청하더라도 과제선정 평가에서 별도로 우대하지 않으며 다만 연구관리 및 활용 시 별도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관연구기관에서도 보안관리 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하신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방법

- 연구개발의 필요성 : 수행하려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국내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연구개발 목표의 성격, 연차별 연구내용 및 연도별 연구개발의 추진일정 등을 기술합니다.
-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 해당 연구개발결과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이용될 수 있는 기준 또는 주안점을 가시적이고 정량적으로 기술합니다.
-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 추진전략·방법 : 기술정보수집, 전문가확보, 다른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술합니다.
 - 추진체계 : 국내·외 수준과 우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연구개발 최종목표의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하려는 내용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합니다.
-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추진계획(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추진배경, 성공가능성, 연구개발비, 연구개발 인력,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용 및 향후 추진일정 등 기술합니다.
-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 활용방안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기업화, 추가연구, 기술이전 등을 서술합니다.
 - 기대성과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기술적 측면과 경제·산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간단명료하게 기술합니다.
- 연구개발결과의 성과 및 활용목표 : 연구개발을 통한 연차별 연구성과 목표 및 연구결과 활용 목표 등을 기술합니다.
- 주관연구책임자 주요 연구실적(5개 이내) : 대표적 실적을 5개 이내로 작성하고, 비고란에는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합니다.
- 주관연구책임자 특허, 실용화 실적 : 특허, 실용화 실적을 10개 이내로 서술합니다.
-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그 현황을 기록합니다.
- 연구성과의 등록·기탁 의향 : 이 과제 수행을 통해 창출한 논문, 특허, 보고서원문, 연구기자재,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화합물, 소프트웨어 등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13항에 따른 연구성과 분야별 관리·유통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 여부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세부·협동·위탁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편성표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인적사항 등을 작성합니다.
-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연구개발비의 예상 소요비용을 비목별로 작성합니다.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 3 비목별 연구개발비 산정 및 사용 기준 참고
- 연구책임자계정 학생인건비 잔액 현황 : 기관별로 통합 관리하는 학생인건비중 연구책임자 계좌의 잔액 및 제안과제에 계상된 학생인건비를 기재합니다.
-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4에 따른 분류 및 결정사유를 서술합니다.
-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해당 연구실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 참여연구원의 교육훈련 및 건강검진실시, 보험가입 등) 및 기타 당해 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필요한 연구실안전 확보 계획 등을 서술합니다.
- 신청기업 현황: 신청기업의 기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재무사항 등을 간단하게 작성합니다.